

## On-Line 중재 상담실

### Q 신문1면 광고를 이용한 명예훼손 건

지방신문 1면 광고를 이용하여 개인의 실명 등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광고 의뢰자는 실명 없이 의뢰하였고 신문사 측은 기사가 아닌 광고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광고의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노골적인 음해성 광고입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 방법 등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귀하와 광고의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과 형사상 명예훼손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광고심의 및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Q 반론보도청구에 관한 문의사항

기사에 대한 반론문을 내고 싶으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꼭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나요?



A 귀하와 언론사, 언론중재위원회, 법원에 각각 반론보도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별개의 절차이며, 어느 절차를 먼저 꼭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언론사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경우에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기재하고 반론의 대상인 보도내용 및 반론을 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반론보도문을 명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려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정의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Q 정정보도청구

정기간행물(잡지)의 오류보도에 대해 당해 매체사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A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 등을 요청하실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시되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서에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시고 조정의 대상인 보도 내용과 정정을 구하는 이유 그리고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귀하가 직접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 반론보도를 요청하였으나 협의 불성립이 되었을 경우에는 협의 불성립이 된 날을 기점으로 14일 이내

에만 우리 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의 불성립이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로 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 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녹취된 통화내용 방송**

방송 기자가 기자임을 밝히지 않은 상태로, 즉 일반인임을 가장하여 통화한 내용이 녹취되어, 음성변조 없이 방송이 되었고, 이에 대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음성을 비밀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기자 자신이 신분을 속이고 취재 상대방인 귀하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언론에 여과 없이 공개하였기에 음성권 침해로 법원에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음성권 침해라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Q 허위보도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

저는 모 예고의 강사입니다. 지난 2월초 지역신문인 00일보에서 학교의 강사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지침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00일보는 그 기사 안에 저의 이름을 이니셜로 거론하며 제가 학교 외에 근무하던 학원의 실질적인 경영인이면서 학원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다는 전혀 사실 무근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 때문에 저는 현재 재직 중인 학교에 재임용되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기사 내용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저는 현재 학원 강사를 그만둔 상태입니다.

이 기사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A** 귀하는 사실과 다른 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이므로 저희 중재위원회에 정정이나 반론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니셜로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보도가 귀하에 관한 것임을 주위 사람들이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언론사가 귀하에 관한 보도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조정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Q 00일보의 『서울택시 경기도 영업 극성』이란 기사를 읽고 마음이 심히 불편합니다.**

저는 서울의 한 택시기사 운전자입니다. 00일보의 기사를 읽고 직접 현실을 겪고 있는 택시운전자로서 이 기사가 형평성을 잃었다고 생각돼 정정보도 내지 사과보도를 요청합니다. 기사를 보면 마치 서울 택시기사만 경기도에 가서 불법영업을 하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택시 역시 서울에 와서 영업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는 서울택시 기사만 불법영업 하는 것 같이 기사를 썼는데 정확히 하려면 서울시에 접수된 경기도 택시의 불법영업에 관한 것 역시 비교하면서 기사를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기사에 관하여 정정내지는 사과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십시오.

**A** 귀하가 문제를 제기한 원 보도는 사실관계가 진실에 부합하므로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경기 택시기사들이 서울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는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언론사가 가진 편집의 자유로서 인정될 소지가 높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민간언론평해상담센터 02) 397-3000, 3010, 310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